보수규정 시행내규 [1994. 3. 15 내규 제29호]

소통복지처 02-6311-2286

개정 1995. 12. 1 내규 제 56호
1996. 1. 1 내규 제 64호
1997. 2. 14 내규 제 66호
1997. 10. 24 내규 제 75호
1998. 4. 20 내규 제 87호
1999. 4. 1 내규 제102호
2000. 5. 13 내규 제143호
2000. 8. 10 내규 제149호
2001. 1. 22 내규 제163호
2001. 7. 5 내규 제170호
2002. 7. 26 내규 제194호
2004. 5. 14 내규 제225호
2005. 11 .18 내규 제238호
2006. 6 .23 내규 제270호
2008. 3 . 7 내규 제299호
2008. 5 .29 내규 제306호
2009. 1. 15 내규 제326호
2010. 9. 3 내규 제415호
2010. 12. 29 내규 제426호
2011. 8. 10 규정 제599호
2012. 1. 9 내규 제452호
2012. 2. 20 내규 제458호
2013. 3. 12 내규 제487호
타 규정 개정 2013. 4. 1 규정 제697호
2014. 3. 3 내규 제517호
2014. 6. 17 내규 제523호
타 규정 개정 2014. 9. 17 규정 제757호
2015. 9. 14 내규 제575호
2016. 1. 28 내규 제588호
2016. 6. 1 내규 제59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보수규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 사망 시 보수계산) 규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수는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실제에 따라 해당 분을 계산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순직한 경우의 보수계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7.10.24)

제3조(결근자의 보수 계산)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자의 제수당 지급제한 규정은 가족수당, 자격면허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에 대하여는 제6조에 의한다.(개정 97.10.24, 01.1.22, 02.7.26, 04.5.14, 08.3.7, 09.1.15, 2013.3.12)

제3조의2(신분변경시의 보수계산) 규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강등처분에 의한 정직 포함), 복직의 경우에의 제수당 제한규정은 가족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98.4.20 개정 01.1.22, 02.7.26, 04.5.14, 08.3.7, 09.1.15, 10.12.29, 2013.3.12)

제4조(파견자의 보수계산) ①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1.1.22)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96.1.1, 98.4.20)

제5조 삭제(2004.5.14)

제6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13조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여수당

가. 상여수당 중 정급은 지급일(매월 20일, 설.추석이 급여일 이전인 경우 5일전) 현재 재직 중인 직원(휴직, 직위해제, 정직(강등처분에 의한 정직포함), 연봉대상자 제외)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와 복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전회지급 다음 달 1일부터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 말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당해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1.22, 04.5.14, 10.12.29 12.2.20)

나. 상여수당 중 정급은 2월∽11월에 기본급의 10%를, 설.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되 명절이 급여일 이전일 경우 명절 5일전에 지급하며 인센티브성과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04.5.14, 10.12.29 12.2.20)

다. 인센티브성과급은 휴직자(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자, 정직자(강등처분에 의한 정직포함), 교육훈련파견자, 병가자(공상병가 제외)는 평가기간중 근무일수에 따라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중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최종 결정된 당사자의 지급률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당해년도 신규채용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0.12.29 12.1.9)

라. 상여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2. 연차휴가수당(개정 08.3.7)

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차휴가 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2.7.26, 04.5.14, 08.3.7)

나. 연차휴가수당은 매년 5월말일 및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2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개정 04.5.14, 08.3.7)

다. 취업규칙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질병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연차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08.3.7)

3. 가족수당

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2008. 1. 1 이후 출생자녀에 한 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08.3.7)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세목 1에 해당하는 자, 세목 2에 해당하는 자중 장남(장남이 불구폐질인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인 직원의 직계존속, 세목 3에 해당하는 자중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개정 2010.9.3)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불구폐질자(개정 97.10.24)

(3)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불구폐질자(개정 97.10.24)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중 불구폐질자(개정 97.10.24, 2010.9.3)

(5) 부모가 모두 가족수당 지급대상자인 경우 20세 미만의 형제자매(개정 97.10.24, 2002.7.26)

다. “나”목에서 “불구폐질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2.7.26)

라.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97.10.24)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정보를 인사정보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02.7.26, 04.5.14, 05.11.18, 2010.9.3)

바.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허위사실에 의하여 가족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지급수당을 환수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2.7.26, 04.5.14)

4. 기술수당

가. 직무별 기술수당 지급대상 자격종목은 별표 1과 같다.

나. 인재개발원 직원으로서 해당 기술분야 전임교수 및 기술연구소근무자,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인, 안전총괄실 직원으로서 안전지도업무전담 수행직원, 종합관제센터 직원으로서 해당 기술분야 사령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분야 근무자로 본다. 또한 정원에 반영된 각 소속에서 동일 직렬 및 직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해당분야 근무자로 본다.(개정 2002.7.26, 2006.6.23, 2008.5.29, 2010.9.3, 2011.8.10, 2014.9.17)

다. 가목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인사정보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02.7.26, 05.11.18, 2010.9.3)

라. 수당지급 기준일은 수당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월 14일 이전 신청분에 한하여 당월에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02.7.26, 05.11.18, 08.3.7, 2010.9.3)

마. 수당을 지급받던 중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직원은 이를 즉시 인사정보에 변경 등재하여야 하며 급여담당부서장은 변경사항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98.4.20, 02.7.26, 05.11.18, 2010.9.3)

바. 전보발령자에 대하여는 급여담당부서장이 해당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02.7.26, 05.11.18, 2010.9.3)

사. 삭제 (02.7.26)

5. 자격·면허수당(신설 96.1.1)

자격·면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 2에 의하되 소속장의 지급 요청에 따라 지급한다.

6. 삭제(2001.1.22)

7. 보전수당(신설 97.10.24, 02.7.26)

실제 근무일수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삭제(2012.2.20)

9. 삭 제(2006.6.23)

10. 삭 제(2008.3.7)

11. 삭 제(2008.3.7)

12. 삭 제(2010.9.3)

13. 대우수당(신설 04.5.14 개정 12.2.20, 2013.3.12)

4급 직원중 당해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5급은 승진소요년수 4배수 경과자에게 지급한다. 단, 해당 근무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월중 근무실적이 있는자에게 지급한다.

14. 삭제(14.6.17)

15. 직급보조비(신설 12.2.20)

입사일에 따른 차별없이 월중 근무실적이 있는자에게 지급한다.

16. 조정수당

실제 근무일수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6.1.28.)

제7조(급여자료제출 및 정산) ① 급여담당부서장은 전 직원의 근태현황에 따라 보수를 정산처리한다.(개정 98.4.20, 02.7.26, 04.5.14, 05.11.18, 06.6.23, 08.5.29, 2010.9.3)

② 급여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자는 매월 1일~14일까지 급여담당부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내 전산망을 통해 본인이 전산 입력하였을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7.10.24, 02.7.26, 06.6.23, 2010.9.3)

③삭제 (02.7.26)

[제목 개정 10.12.29]

제8조(일할계산) 보수의 일할계산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개정 2013.3.12)

제9조(지급의 특례) ①이 내규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제6조제9호의 조정수당은 199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수당은 1995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96.1.1)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수당은 1995년 11월 15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4)

①(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자격·면허 수당 지급대상자 중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수당 등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200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200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200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산업안전” 기술자격에 대한 지급대상 조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제6조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6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당시 통폐합 및 폐지된 기술자격에 의하여 기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계속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술수당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7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200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도 인센티브성과급 지급률 결정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99호, 2011.8.10>(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나목 중 “창의교육단”, “기술연구센터” 및 “본부 · 단 · 실”을 각각 “ 인재개발원”, “기술연구소” 및 “ 각 소속”으로 한다.

별표1 지급대상란 중 “환경관리팀”을 “녹색환경팀, 맑은터널팀”으로 하고, “5678고객센터의 여객관제요원 포함”을 “서비스고도화단(여객관제 요원)”으로 하며, “5678고객센터”를 “서비스고도화단(여객관제요원)”으로 하고, “서비스지원팀”을 “서비스관리팀”으로 한다.

⑲ ~ 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30401 직제규정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개정) ①~㉑ 생략

㉒ 보수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안전관리분야 지급대상란 중 “안전관리실(비상계획팀 제외)종사자”를 “안전관리실 종사자”

로 하고, “녹색환경팀 맑은터널팀 요원”을 “환경에너지팀 요원”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2의 자격면허 지급대상 조정은 이 내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이 내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00.5.13, 02.7.26, 05.11.18, 06.6.23, 08.5.29, 09.1.15, 11.8.10, 2013.4.1., 2014.9.17., 2016.6.1.)

직무별 기술수당 지급대상 자격종목(제6조제4호 관련)

직무분야	기 술 자 격 종 목	지 급 대 상	비고
차 량	기계제작, 일반기계, 생산기계, 기계가공,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전산응용가공, 메카크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조립, 기계정비, 산업기계, 판금, 판금제관, 일반판금, 배관, 배관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 천장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공조냉동기계, 가스,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자동차정비, 계량기계,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전기응용,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금속도장, 전자계산기	차량업무 종 사 자	
시 설 분 야	가구도장, 가구제작, 가스용접, 거푸집, 건설기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배관,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전기설비, 건축제도, 건축품질시험, 공업계측제어, 금속, 금속도장,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재창호, 기계정비, 기계제작, 기계조립, 농어업토목, 누설비파괴검사, 도로및공항, 도시계획, 도화, 목공예, 목재창호, 미장,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수, 보선, 비계, 비파괴검사, 상하수도, 석공, 소방설비, 소음진동, 실내건축, 와전류비파괴검사 ,용접, 유리시공, 응용지질, 일반기계, 자기비파괴검사,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자, 전자기기, 전자응용, 조경, 조적, 지도제작, 지적, 지적기능, 철골구조물, 철근, 철도, 철도보선, 초음파비파괴검사, 측량,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침투비파괴검사, 콘크리트, 타일, 토목,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제도, 토목품질시험, 토질및기초, 특수용접, 포장, 품질관리, 항공사진,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환경	시설업무 종 사 자	

직무분야	기 술 자 격 종 목	지 급 대 상	비고
기 술 분 야	가스, 가스용접,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배관,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공조냉동기계, 기계가공, 기계안전, 기계정비, 기계제도, 기계조립, 대기관리, 대기환경,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밀링, 발송배전, 방송통신, 배관, 배관설비,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사무자동화, 산업기계, 생산기계, 선반, 소방설비,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승강기, 연삭, 열관리, 철도운송, 용접, 위험물, 유체기계, 일반기계, 일반판금,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안전, 전기용접,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기기, 전자응용,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밀측정, 정보기기운용, 정보통신, 제관, 철도신호,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특수급무선통신사, 판금, 폐기물처리, 품질관리, 환경	기술업무 종 사 자	
전 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전자, 전자기기, 정보기술, 정보기기운용	전산업무 종 사 자	
안전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안전총괄 종 사 자	
	대기관리, 대기환경, 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안전방재처 요 원	
승 무	일반기계, 생산기계, 기계조립, 기계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전산응용가공, 전기, 전기기기,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방송통신, 무선설비, 철도운송	승무업무 종 사 자	
부대사업	건축, 도시계획	부대사업 전담수행자	
용지보상	도시계획, 지적	본사의 자산관리업무 전담 수행자	
모 타 카 정 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모 타 카 운용요원	

직무분야	기 술 자 격 종 목	지 급 대 상	비고
기 타	공정관리	기술부서 종 사 자	
	수질관리, 수질환경	폐수관리 요 원	
	대기관리, 대기환경, 환경, 위험물	보일러관리 요 원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환경	건강관리실 종 사 자	
	철도운송	고객서비스본부, 서비스지원사업소, 역 종사자(종합관제센터의 열차관제요원 및 여객관제 요원)	
	사진	사진기사	
	지게차운전	지게차운전 요 원	
	정보관리, 정보처리, 교통,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 부 서	
	사무자동화	사무직렬	
	산업안전	·현업 기술부서(사무·특수직 제외) ·현업역무종사자·본사 기술부서 (사무·특수직 제외) 및 감사실, 종합관제센터, 안전총괄실(비상계획처 제외), 서비스지원처	

[별표 2](개정 01.7.5, 05.11.18, 06.6.23, 2013.3.12, 2014.3.3, 개정 2014.6.17)

자격·면허수당 지급대상자(제6조제5호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비 고
1 종	전 임 교 수 요 원	(폐지)
	전 산 요 원	(폐지)
	감 사 인	(폐지)
	간 호 사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 취득자로서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한다.
	영 양 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면허 취득자로서 집단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에게 지급한다.
	안 전 관 리 자 · 소 방 안 전 관 리 자	전기사업법 제45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2조, 교통안전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15조, 소방법 제9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와 동법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전파법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63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8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선임등록된 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제22조에 의한 관제업무종사자(열차관제사)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정화조기술관리인에게 지급한다.
2 종	자 동 차 운 전 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각종 장비 및 자동차운전(중기조종 및 모타카 운전업무 포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보유자로서 구내입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차량직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게차 운전 자격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차량직원에게 지급한다.
	간 호 조 무 사	의료법에 의한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자로서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한다.
	조 리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자격 취득자로서 집단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에게 지급한다.
3 종	안 전 관 리 보 조 원	1종 안전관리자 비고란에 명시된 관계법령에 의건 선임 등록된 안전관리보조원에게 지급한다.
4 종	공 인 회 계 사 세 무 사 감 정 평 가 사 공 인 노 무 사 변 호 사 변 리 사 법 무 사 경 영 · 기 술 지 도 사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취득자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경영·기술지도사는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2.7.26, 2006.6.23., 2010.9.3., 15.9.14)

부양가족(취득·상실)신고서(제6조제3호 관련)

수 신 :

신청인	사원번호	직급	성 명	입사일자	성별	주 소
		급				

금회 신고 내용	관 계	성명	생년월일	신고사유	사유발생일	주 소

인원 현황	구 분	배우자	존속	비속	계	※ 별거 직계존속 확인사항 □ 본인이 장남 □ 본인이 무남독녀
	신고전					
	신고후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 "신고사유"는 출생,결혼,연령도래,연령초과,사망,합가,비동거,불구폐질 등으로 구분표기
○ "사유발생일"은 출생일, 결혼일 등을 기입
○ 제수당 점검시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삭 제(2010.9.3)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9.3)

기술수당지급신청서(제6조제4호 관련)

수 신 :

연번	사원번호	직급	성명	지급 구분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증 번호	직렬	담당업무

○"지급부분"란은 신규지급, 변경지급으로 표기

○"담당업무"란은 역무원, 전임교수, 감사인, 안전지도원, 사령원 등으로 표기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삭 제(2010.9.3)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9.3)

자격·면허수당 변동신고서(제6조 관련)

(☎)

수 신 :

연번	사원번호	급호	성명	지급대상	사유	선임일 또는 해임일	담당업무

○본 서식은 자격면허수당의 신규지급 및 지급중지 요청용임

○"지급대상"란은 안전관리자(보조원), 방화관리자, 자동차운전원 기재

○"사유" 선임 또는 해임 구분표기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0.9.3)

급여계좌변경신청서(제7조 관련)

수 신 :

연번	사원번호	직급	성명	계좌번호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　　은행)	(　　은행)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귀하